상해 공제사업규칙

2009.08.26.	제정	2009.12.08.	개정
2010.02.16.	개정	2010.06.18.	개정
2011.04.25.	개정	2015.01.26.	개정
2016.02.25.	개정	2017.01.24.	개정
2017.05.17.	개정	2018.01.17.	개정
2019.01.15.	개정	2021.01.12.	개정
2021.08.23.	개정	2021.12.20.	개정
2022.01.19.	개정	2023.01.17.	개정
2024.01.05.	개정	2024.12.11.	개정
2024.12.31.	개정	2025.06.27.	전부개정
2025.12.31.	개정	2026.01.23.	개정
		2026.03.1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시행하는 상해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해 공제사업”이란 사망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보상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단체상해 공제사업”이란 회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사망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보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시민안전 공제사업”이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보상하는 사업을 말

한다.

2. “회원”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제금 또는 보험금”이란 공제금 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손해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4. “공제요율”이란 사고발생 가능성, 손해액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산출된 공제회비 산정 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상해 공제사업의 업무처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이나 다른 내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업무의 분담)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회원을 대리하여 손해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이하 “보험사”라 한다.)와 단체보험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보험료를 공제회의 재원으로 우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 당사자는 회원과 보험사가 되며, 공제회는 공제회비의 징수 및 권리·의무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보험사는 손해의 조사, 공제금 또는 보험금(이하 “공제금”이라 한다.)의 결정 및 지급, 보험에 관련된 소송의 대행, 손해예방지도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관련된 권리·의무 당사자는 회원과 공제회가 되며, 공제회는 공제회비의 징수, 손해의 조사, 공제금의 결정 및 지급, 재보험 가입 등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사는 공제회가 출재한 위험을 인수한다.

④ 업무의 분담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상해 공제사업 및 시민안전 공제사업 업무협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2장 공제등록 및 회비산정

제5조(공제등록 대상)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상해공제 등록대상

   가. 회원의 업무수행을 하는 자

   나. 회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자

2. 시민안전공제 등록대상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군·구민

제6조(공제등록 신청)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회원이 공제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 약관에서 정한 공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공제회비 산정기준) ①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 공제회비는 공제등록 대상의 기준값(연령별 인구수), 보상한도 및 특별담보 등에 공제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제요율은 별지 제1호 상해공제 요율서에 따르며, 공제요율은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개정 2026.01.23.>

③ 제2항의 요율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제요율에 대하여는 보험사와 협의한 협의요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공제금 지급

제8조(회원의 사고통보) ①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원은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늘어난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 ①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1. 공제금 청구서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그 밖의 공제회 또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금 지급신청서류를 접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다만,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하여 보험사가 공제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같은 기간 내에 마칠 수 없거나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회 또는 보험사가 추정한 공제금의 50% 이상을 가지급 공제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공제금 지급액 결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지연배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공제금 보상한도액) 공제회 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공제금 보상한도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담보별 가입금액을 보상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등록증권에 자기부담금이 명시된 경우에는 1회 사고 때에 보상하는 금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지급한다.

제4장 보 칙

제11조(약관) ① 공제회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상해 공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약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회원 및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3.12.>

1. 단체상해공제약관 [별첨 1]
2. 시민안전공제약관 [별첨 2]

③ 제1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등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규칙 제167호, 2009.08.26.>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68호, 2009.12.08.>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72호, 2010.02.16.>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79호, 2010.06.18.>

이 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90호, 2011.04.25.>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55호, 2015.01.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70호, 2016.02.25.>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91호, 2017.01.24.>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18호, 2017.05.17.>

이 규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19호, 2018.01.1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18호, 2019.01.15.>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67호, 2021.01.12.>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77호, 2021.08.23.>

이 규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91호, 2021.12.2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97호, 2022.01.1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21호, 2023.01.1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51호, 2024.01.05.>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60호, 2024.12.1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64호, 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78호, 2025.0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공제등록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568호 시민안전공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규칙 제603호, 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610호, 2026.01.23.>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612호, 2026.03.12.>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